

2020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FAQ

I. 대출 진행 관련

Q 1-1

IP담보대출이 무엇인가요?

A 1-1

특허청이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출시한 담보대출 상품으로, 지식재산(특허)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이를 담보로 하여 받는 기업대출입니다.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및 여신한도 등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.

Q 1-2

IP담보대출 은행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지정 또는 연결해 주나요?

A 1-2

한국발명진흥회는 직접 자금을 지원하거나 금융기관을 매칭·추천하지 않습니다. 직접 주거래은행 등 영업점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.
※ 국민·기업·농협·부산·산업·신한·우리·하나은행이 IP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. (2020년 3월 현재 기준)

Q 1-3

매출이 전혀 없거나 신용불량인 기업도 IP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?

A 1-3

대출가능 여부는 은행의 기업에 대한 재무평가, 비재무평가 등을 포함한 신용평가 및 예비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며, 신용 불량인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대출 세부 조건은 각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은행별 홈페이지의 상품 안내 페이지 또는 각 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은행명	상품명	☎ 고객센터
국민은행	KB더드림 IP담보대출	1800-9500
기업은행	IP사업화자금대출	1588-2588
농협은행	NH 지식재산권 담보대출	1661-3000
부산은행	지식재산권(IP) 담보대출	1544-6200
산업은행	IP담보대출 (테크노뱅크)	1588-1500
신한은행	신한 성공두드림 IP담보대출	1577-8008
우리은행	우리 CUBE론-X	1588-5000
하나은행	하나 IP담보대출	1599-1111

II. 지원조건 관련

Q 2-1

특허를 출원하였으나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.
지원이 가능한가요?

A 2-1

아니오. 출원중인 특허는 지원불가하며, **반드시 등록된 특허**를 보유해야 합니다. 또한, 은행별 담보물 취급 내규에 따라 권리 등록 후 일정 기간 (예: 6개월) 이상 경과해야 담보대출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은행에서 대출상담 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Q 2-2

개인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
A 2-2

네. IP제품 및 서비스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며, **중소기업에는 개인사업자도 포함**됩니다. (단, 개인사업자의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상담 시 확인 필요, **산업은행은 법인사업자만 대출 가능**) 또한, 개인사업자의 경우 **사업자 본인의 특허인 경우** 지원 가능합니다.

Q 2-3

초기 중견기업의 범위와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?

A
2-3-1

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며, (1)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(최초 3년의 유예기간)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(중소기업 최초 졸업 후 6년) 이내, (2)직전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.

A
2-3-2

상기 요건(1)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, **한국중견기업연합회**를 통해 **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시 <특례대상 중견기업 확인>**을 추가로 요청하고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어, 평가지원사업 신청 시 재무제표와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올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 발급 신청 시 "특례여부 확인"에 '예'라고 체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. 이미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온라인상 접수가 되지 않으니 발급처(한국중견기업연합회, 02-3275-2986)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.)

Q 2-4

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는데, 지원이 가능한가요?

A 2-4

특허권 등에 (근)질권을 설정하는 담보대출 상품 특성상 지원대상이 권리 보유자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단, 은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전용실시권으로 대출 가능한지 개별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Q 2-5

권리자가 복수(예: 법인과 공동 대표)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?

A 2-5

네. 신청 기업은 공동권리자로부터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참여 및 수혜에 관한 위임장(공고 내 양식 참조)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은행 내규에 따라 공동 권리자 특허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며 법인으로 권리 이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
Q 2-6

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?

A 2-6

아니오. 현재는 특허만 지원 대상입니다.

Q 2-7

사업화, 보증, 투자 등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요?

A 2-7

동일 권리에 대한 평가는 각 사업연도에 사업화 1회, 금융(보증 or 투자, or 담보대출) 1회씩 지원 가능합니다. (연 최대 2회)

Q 2-8

신청자의 변심 등으로 중도 포기 및 지원 취소하는 경우 제약이 있나요?

A 2-8

네.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및 지원 취소하는 경우, 당해 연도 지원 사업 종료 후 2년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, 나아가 다른 특허청 지원 사업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(예: 2020년 평가지원 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단순변심 등으로 취소하는 경우, 2022년까지 동 사업 참여 제한)

III. 지원신청 및 절차

Q 3-1

가치평가 결과를 추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나요?

A 3-1

지식재산 가치평가는 활용 목적에 따라 가치 추정에 사용되는 요소와 방법론이 다르고 이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, **평가결과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. 또한 평가보고서 유효기간이 있어 해당 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
(*IP담보대출연계 평가지원의 경우, 평가보고서가 발명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에 직접 제공됨)

Q 3-2

제출서류 중 '특허등록원부'는 무엇인가요? 특허증과 같은 건가요?

A 3-2

특허등록원부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같이 특허 및 실용신안의 권리 관계를 표시한 문서로, 신청 기업이 해당 특허의 최종권리자이며 권리 관계상 다른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.

특허증과는 별개로, 특허로 홈페이지(www.patent.go.kr)에서 온라인 발급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.

Q 3-3

평가수수료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국고지원금은 신청 기업에게 직접 지급되나요?

A 3-3

국고지원금(50%)은 신청 기업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, **보조금 수령 권리를 양도받은 발명의 평가기관에 직접 지급**됩니다.

이와 별개로, 신청 기업은 발명의 평가기관에 국고지원금에 대한 부가 가치세(10%)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 (국고 미지원분은 은행이 지원)

Q 3-4

발명의 평가기관은 신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나요?

A 3-4

아니오.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의 경우, **금융기관(은행)이 발명의 평가기관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의뢰**합니다.

Q 3-5

지식재산평가의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
A 3-5

평가 건별로 상이하나 평가 자체(평가 착수에서 평가보고서 완료까지)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개 1개월입니다. (보조금 지원 및 행정 절차 별도)